

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갑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연결사업연도		연결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	
--------	--	-------	--	---------	--

1.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조정

구 분			금 액
①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			
② 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			
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(①-②)			
일반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	④ $\frac{1,200\text{만원}}{(\text{중소기업 } 3,600\text{만원})} \times \frac{\text{해당 사업연도 월수()}}{12}$		
	총수입금액 기준	100억원 이하의 금액×30/10,000	
		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×20/10,000	
		500억원 초과 금액×3/10,000	
	⑤ 소계		
	일반수입금액 기준	100억원 이하의 금액×30/10,000	
		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×20/10,000	
		500억원 초과 금액×3/10,000	
	⑥ 소계		
⑦ 수입금액 기준	(⑤-⑥)×20(10)/100		
⑧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(④+⑥+⑦)			
문화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 (「조세특례 제한법」 제 136조제3항)	⑨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		
	⑩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[⑨과 (⑧×20/100) 중 적은 금액]		
전통시장 ·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 (「조세특례 제한법」 제 136조제6항)	⑪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		
	⑫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		
	⑬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		
	⑭ 전통시장,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[⑪, ⑫, ⑬의 합계액과 (⑧×20/100)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]		
⑮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합계(⑧+⑩+⑭)			
⑯ 한도초과액(③-⑮)			
⑰ 손금산입 한도 내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(③과 ⑮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)			

2.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계산

⑮ 연결법인명	⑰ 사업자등록번호	⑲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	⑳ 각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의 합계액	㉑ 해당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	㉒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개별귀속액 (㉑×㉒/㉑)

작성 방법

1. ①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란: "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76호의15서식(을)]"의 ⑮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.
2. ② 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: "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76호의15서식(을)]"의 ⑳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.
 - * 기준금액(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1조제1항)
 - 경조사비: 20만원
 - 경조사비 외의 기업업무추진비: 3만원
3.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(④~⑧)
 - 가.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,200만원, 중소기업은 3,600만원을 적용합니다.
 - 나. 총수입금액 기준의 금액란: "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76호의15서식(을)]" ⑤란의 합계금액과 ⑥란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 - 다. 일반수입금액 기준의 금액란: "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76호의15서식(을)]" ⑥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 - 라.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「법인세법」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(④+⑥+⑦)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 - 마.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10%를 적용합니다.
 - 바. ⑧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시 법인이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⑧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4.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(⑨~⑩)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. ⑨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중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.
 - *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적용한도를 10%에서 20%로 확대
5. 전통시장·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한도(⑪~⑭)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6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·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. ⑪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, ⑫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및 ⑬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중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6조제6항에 따른 지출액을 각각 적습니다.
 - 이 경우 ⑫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6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제7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에 기재된 금액을 포함합니다.
6. ⑮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 "0"으로 적습니다.
7. ⑳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은 ⑮ 한도초과액란의 금액과 같습니다.
8. ㉑ 각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의 합계액란의 금액은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9. ㉒ 해당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란: "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76호의15서식(을)]"의 각 연결법인별 ⑮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에서 ㉑ 손금불산입액개별귀속액을 뺀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
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을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연결사업연도		모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	
--------	--	------	--	---------	--

1. 수입금액명세

①연결법인명	②사업자 등록번호	③수입금액총액	④연결법인간 양도손익 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	⑤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	⑥일반 수입금액 (③-④-⑤)
합 계					

2.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계산

⑦연결법인명	⑧사업자 등록번호	⑨기업업무 추진비 계상액 (⑩+⑮)	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에서 제외하는 금액					⑮기업업무 추진비 해당 금 액 (⑨-⑩)
			⑩합계 (⑪ + ⑭)	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			⑭사적사용 경 비 (연결법인 지급액 제외)	
				⑪계 (⑫+⑬)	⑫기업업무 추진비 해당 금액	⑬사적사용 경 비		
합 계								

3. 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

⑯연결법인명	⑰사업자 등록번호	⑱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따 른 기업업무추진비 부인액 합계	⑲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	⑳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(⑲-⑱)
합 계				

작성 방법

1. ③수입금액총액, ④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, ⑤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, ⑥일반수입금액란: 해당 업종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(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 부문의 매출액을 포함)을 적습니다. 다만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, 집합투자업자 등의 법인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2. ④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란: 연결법인간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20조의18에 따라 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적습니다.
3. ⑤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란: 「법인세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 ④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.
4. ⑨기업업무추진비 계상액란: 기업업무추진비 계정에 계상된 금액 및 기업업무추진비 이외의 다른 계정에 계상된 금액 중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5. ⑩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란: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 중 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및 사적비용 성격의 기업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(「법인세법」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).
6. ⑪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부인액 합계란: 각 연결법인별로 "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23호서식(을)]"⑪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합계금액을 적습니다.
7. ⑫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란: ⑪란의 금액 중 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을 적습니다.